

## 치과의사 연금제도

齒協의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尹興烈회장의 공약사업중 하나인 치과의사 연금제도가 곧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註

### “회원의 노후보장, 향후 빈번하게 발생할 醫療 紛爭 및 각종 災害에 對備”

현재 (주)대한교육보험측과 긴밀한 협조체계 속에 추진되고 있는 치과의사연금제도는 회원상호간의 부조적정신에 입각하여 회원과 그 가족이 노후생활 안정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회원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제3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집행부의 연구검토(안)으로 위임된 바 있는 회원공제회 규정(안)을 보완하여 의료분쟁시의 지원, 자금대출지원 등을 포함한 치과의사연금제도(안)의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상정안으로 채택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토록 가결된 바에 따라 동 제도를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으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

치과의사연금제도는 그 목적이 익히 알려져 있듯이 일차로 회원들의 노후대책과 퇴직금제도의 운용 및 사망이나 재해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편으론 의료분쟁시 대책수립과 회원의 경

조사 및 복지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항은 의료분쟁 발생시 지원 및 대책수립의 부분과 회원복지 사업,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는 부분일 것이다. 현재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피해 규제법”의 명칭으로 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보사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치협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입법 취지와 업무추진 경과에서 보면 의사중심으로 되어 있어 치과영역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치과의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많은 불이익 조항들이 있어 그 대책의 일환으로 연금제도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가칭)“의료분쟁 조정법”에 치협이 독자적으로 대처할 명분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참조 (가칭)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업무현황 경과보고).

가칭)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업무현황

#### [경 과 보 고]

1) “의료사고 피해 규제법”의 명칭으로 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음

가) 일시 : 1991. 6.14(금) 14:00

나) 장소 : 전경련 회관 3층 대회의실

다) 주관 : 보건사회부

치협에서는 법제이사와 사무총장이 참석

## 2) 의료사고 피해규제법안 제정에 대한 건의 및 회신 접수(대: 보사부/1991. 7. 8. 7. 27)

### 가) 건의내용

의료사고의 대한 분쟁을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할 목적으로 의료사고 피해 규제법(안)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하나, 치과의사에 대한 중재위원, 심판위원배제, 의료사고 분쟁빈도 및 일정률 구제기금의 각출 등, 법률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과 몇가지의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점 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 제정코자하는 의료사고 규제법안에서 일반 사고와는 별도로 치과의료사고 피해를 분리하여 협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건의함.

### 나) 건의에 대한 회신

치과의료행위에 의한 분쟁도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으나 향후 세부적인 입법안이 마련되는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견 통보 접수.

## 3) 제2차(7칭)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공청회 개최

가) 일시: 1991. 8. 23(금) 14:00~18:00

나) 장소: 국립 보건원 강당

다) 주최: 보건 사회부

치협에서는 법제이사와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치과의사를 동법 제정작업에 참여 시켜주거나 아니면 치협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치과분야를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보사부 당국자는 치과분야를 제외시키는 방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말함.

## 4) 의료분쟁 조정법안 제정에 대한 재건의(대: 보사부/1991. 9. 5.)

### 가) 건의내용

진료 과목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빈도 배제 및 일정률 규제기금 각출과 제16조(기금의 배상 및 보상제외 대상) 범위에 "미용을 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의한 피해"조항에 의거 치과의료기관에서 분쟁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은 교정치료, 심미물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그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치과의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많은 불이익 조항이 있어 "의료분쟁 조정법(안)"에서 일반의료사고와는 별도로 치과의료사고 피해를 독립하여 본 협회가 주관할 수 있도록 재 건의함.

## [ 고 찰 ]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의료사고 피해 규제법 혹은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의 입법취지와 그 업무 추진 진행 경과에서 보면 의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치과의사의 입장은 연구과정에서부터 원초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현행 의료관계의 모든 법령이 의료인 종별로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치과의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편에 놓이게 되는 관계로 더 이상 이와같은 형태의 입법 및 시행에 의한 우리의 어려움과 비현실적인 난점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치과의료분야는 그 분쟁을 발생빈도, 보상액수, 분쟁양상으로서의 분쟁내용 등에 있어 일반의료와 판이하게 달라서 일정률 규제기금의 각출 방법이 비현실적이고 우리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과도한 부담의 여지가 크며 당국자들의 견해로는 분야별로 별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현재로서는 말하고 있으나 신뢰하기 어렵고 일단 각출된 기금은 소모성을 갖게될 것으로 본다.

특히 동법은 실제로 치과의료분야의 분쟁에 대한 보상이 거의 불가능한 내용으로서 치과임상의들의 개원가에서의 애로를 해결 하는데 별도움이 되지 못하고 일반적 부담표의 부담만 갖을 여지가 크다. 이에 비하여 금번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제도는 연금상품자체가 치과의사를 위하여 개발한 신상품이어서 노후대책 등의 치과의사들의 관심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치과의료사고 발생시에 일차적인 보상이 비교적 용이하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되는 장점이 있으며 단체 가입에 따르는 이익 즉 보험외판원의 경비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협회의 기금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어 회원들의 추가 부담없이 그 기금을 운용하여 추가로 치과 의료분쟁 발생시에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 우리 실정에 맞고 부담도 비교적 적은 장점이 있는 것이다. 부언하면, 본 연금제도의 추진에 있어 치과의사들이 개인적으로 기왕에 노후대책을 위하여 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와 동등 내지 다소의 이익이 있는 특수 상품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이익인 추가이득을 기금으로 확보하여 개인으로서는 추가부담없이(지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에 적용을 받을시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그와 비교하여 훨씬 유리한 의료사고 대책이 되어 안심하고 진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석이조, 삼조를 노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협회가 이와같이 연금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에 밀려들지 않는 명분을 세울수 있으므로 그 점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 연금제도의 추진으로 노후대책이나 재해대책, 경제적 자립지원등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훨씬 적고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에 적합한 의료사고 대책"이 이루어지는 추가이익을 가질수 있으며 이는 오로지 모든 치과의사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결함으로써만이 그 이익을 가질 수 있다.

〈자료제공 : 金鐘悅 법제이사〉

이렇듯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이 이제도를 잘알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점차 향상되어가는 국민의 의료지식에 대한 수준과 이로 인해 다양하게 요구되는 의료서비스의 욕구와 맞물려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많겠다고 하겠다. 또한 UR협상이 강대국의 요구대로 타결될 경우 필연적으로 의료분쟁은 전문번호사의 상품으로 등장할 것이다. 때문에 齒協이 마련한 이 제도는 바로 닥쳐올 파고(波高)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有備無患의 정

신으로 준비하자는 것이며 지난해 대의원총회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故 성화수 대의원이나 전북 이리에서 화재로 치과의원을 전소시킨 모원장의 경우를 겪으면서 그때마다 회원들의 주머니에서 각출하여 위로금을 전달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그럴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을 이 연금제도를 통해 이같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齒協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일반연금 및 공제회와 다른 치과연금제도를 위한 추가 보장·운영자금, 최고 3천만원, 긴급가계자금 2천만원까지 대출”

齒協이 마련한 치과의사연금보험제도는 일반연금 및 공제회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그 특징으로는

1. 재해사망, 재해장애, 재해입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은 물론 치협연금제도를 위한 특수조항으로 교통재해사망 및 교통재해장에서 추가로 보장되며
1. 가입한 연금보험에서 발생한 사업비를 협회에 지원함으로써 회원의 복리후생 및 의료분쟁시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1. 퇴직금이 없는 치협회원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1. 적립부담 순보험료를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1.5%로 부리함으로써 단체가입의 높은 수익혜택을 보장하며
1. 연금지급의 자유로운 선택 및 다양한 생활설계와 보험가입 연령이 초과된 회원에게도 혜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1. 단체가입으로 인한 간편한 가입절차와
1. 일반연금보다 적은 기본 부담금(일반 5萬, 치과

의사 3萬)과

1. 구좌제 도입으로 편리한 운영(1구좌(기본) : 3萬, 2구좌 : 6萬, 3구좌 : 9萬)등이 있다(참조 부담금 및 수익을 예시).

#### 1. 부담금 및 수익을 예시

가. 1구좌(월 30,000원)가입

(1) 남 자 (단위 : 천원)

납입기간	납입액	적립액	수익율 (%)	확정연금 (10년)	종신연금	
					60세개시	65세개시
5년	1,800	2,200	122.3	342	292	309
10년	3,600	6,428	178.6	999	855	904
15년	5,400	14,707	272.4	2,287	1,957	2,069
20년	7,200	31,206	433.4	4,852	4,154	4,391
25년	9,000	64,219	713.5	9,936	8,549	9,037
30년	10,800	130,091	1,204.6	20,229	17,317	18,306

(2) 여 자

(단위 : 천원)

납입 기간	납입액	적립액	수익률 (%)	확정연금 (10년)	종신연금	
					60세개시	65세개시
5년	1,800	2,281	126.7	354	281	298
10년	3,600	6,664	185.1	1,036	823	871
15년	5,400	15,245	282.3	2,370	1,883	1,993
20년	7,200	32,345	449.3	5,029	3,996	4,228
25년	9,000	66,565	739.6	10,350	8,224	8,702
30년	10,800	134,845	1,248.5	20,968	16,661	17,629

※ 상기예시표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10%, '90.4월 배당기준(이익 배당금, 장기유지배당금)으로 향후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및 배당을 변동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다. 5구좌(월 150,000원)가입

(1) 남 자

(단위 : 천원)

납입 기간	납입액	적립액	수익률 (%)	확정연금 (10년)	종신연금	
					60세개시	65세개시
5년	9,000	11,372	126.4	1,768	1,513	1,600
10년	18,000	33,214	184.5	5,164	4,421	4,673
15년	27,200	75,990	281.4	11,816	10,115	10,693
20년	36,000	161,233	447.9	25,071	21,463	22,688
25년	45,000	331,800	737.3	51,594	44,169	45,690
30년	54,000	672,143	1,244.7	104,518	89,475	94,583

나. 3구좌(월 90,000원)가입

(1) 남 자

(단위 : 천원)

납입 기간	납입액	적립액	수익률 (%)	확정연금 (10년)	종신연금	
					60세개시	65세개시
5년	5,400	6,786	125.7	1,055	903	954
10년	10,800	19,821	183.5	3,082	2,638	2,789
15년	16,200	45,349	279.9	7,051	6,036	6,381
20년	21,600	96,220	445.5	14,962	12,808	13,540
25년	27,000	198,009	733.4	30,790	26,359	27,863
30년	32,400	401,118	1,238.0	62,373	53,396	56,445

(2) 여 자

(단위 : 천원)

납입 기간	납입액	적립액	수익률 (%)	확정연금 (10년)	종신연금	
					60세개시	65세개시
5년	9,000	11,531	128.1	1,793	1,424	1,507
10년	18,000	33,678	187.1	5,236	4,161	4,403
15년	27,000	77,050	285.4	11,981	9,520	10,073
20년	36,000	163,481	454.1	25,421	20,199	21,373
25년	45,000	336,426	747.6	52,314	41,568	43,984
30년	54,000	681,514	1,262.1	105,975	84,207	89,101

※ 상기예시표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10%, '90.4월 배당기준(이익 배당금, 장기유지배당금)으로 향후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및 배당을 변동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여 자

(단위 : 천원)

납입 기간	납입액	적립액	수익률 (%)	확정연금 (10년)	종신연금	
					60세개시	65세개시
5년	5,400	6,906	127.9	1,073	853	902
10년	10,800	20,171	186.8	3,136	2,492	2,637
15년	16,200	46,148	284.9	7,175	5,702	6,033
20년	21,600	97,914	453.3	15,225	12,098	12,801
25년	27,000	201,496	746.3	31,332	24,896	26,343
30년	32,400	408,180	1,259.8	63,471	50,434	53,365

※ 상기예시표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10%, '90.4월 배당기준(이익 배당금, 장기유지배당금)으로 향후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및 배당을 변동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연금지급방법 및 사고보상

가. 연금지급방법

- (1) 대상회원 : 부담금액을 5년이상 납부하고, 60세 이상이된 회원
  - (2) 연금액 : 각회원의 적립금 규모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
  - (3) 연금수령방법
- (가) 확정연금 : 회원의 사망에 관계없이 10년간 일 정액을 지급
- (나) 종신연금 : 종신까지 지급되며 회원이 10년이전 에 사망하여도 10년간 확정지급
- (4) 연금관리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5년후 적립금에 대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일시금 수 령도 가능함

나. 사고보상

(1) 남 자

보 상 사 유		보 상 금 액		
		1구좌(30,000원)	(3구좌(90,000원))	5구좌(150,000원)
사망· 고도의 징해시	교통재해	2,288만원+적립금	2,888만원+적립금	3,488만원+적립금
	재해 일반	288만원+적립금	888만원+적립금	1,488만원+적립금
교통재해징해시 (2급~6급)	재해 일반	57만원+적립금	177만원+적립금	297만원+적립금
	교통재해징해시 (2급~6급)	1,440만원(2급) ~205만원(6급)	1,524만원(2급) ~217만원(6급)	1,608만원(2급) ~229만원(6급)
재해징해시 (2급~6급)	재해 일반	40.3만원(2급) ~5.7만원(6급)	124.3만원(2급) ~17.7만원(6급)	208.3만원(2급) ~29.7만원(6급)
	재해 일반	5,700원(3일초과시 초과 1일당, 120일한도)	17,760원(3일초과 시 초과 1일당, 120일한도)	29,760원(3일초과시 초과 1일당, 120일한도)

이밖에 신규개원시나 이전개업시, 기계설비교체시  
에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긴급가계자금

**“최소 2천면 이상 가입해야 사업가등, 기금 약 1억 4천여만원 조성 가능”**

齒協은 이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최소인원 2천명이  
상이 최소구좌 1구좌 3만원씩 년 6천만원을 납입해  
야 하는데 만약 최소인원 2천명이 부족할시에도 최  
저금액 6천만원을 납입하면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齒協은 홍보험금액의 3%(대리점수수료)인 년 2천백  
여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데, 향후 5년이  
지나면 약 1억 4천여만원(단, 매년 300명 신규가입  
시)의 기금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참조: 기금조  
성의 예시).

기금조성 예시

월 3만원(1구좌) 불입시

(천원)

최 초 가입인원	구 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000명	연간부담금	720,000	1,548,000	2,484,000	3,528,000	4,680,000
	연간지원액	21,600	46,440	74,520	105,840	140,400
4,000명	연간부담금	1,440,000	2,988,000	4,644,000	6,408,000	8,280,000
	연간지원액	43,200	89,640	139,320	195,240	248,400
6,000명	연간부담금	2,160,000	4,428,000	6,804,000	9,288,000	11,880,000
	연간지원액	64,600	132,840	204,120	278,640	356,400

기준 : 1인당 1구좌(30,000원) 가입시, 매년 300명 신규가입시

(2) 여 자

보 상 사 유		보 상 금 액		
		1구좌(30,000원)	(3구좌(90,000원))	5구좌(150,000원)
사망· 고도의 징해시	교통재해	2,296만원+적립금	2,896만원+적립금	3,496만원+적립금
	재해 일반	296만원+적립금	896만원+적립금	1,496만원+적립금
교통재해징해시 (2급~6급)	재해 일반	59만원+적립금	179만원+적립금	299만원+적립금
	교통재해징해시 (2급~6급)	1,441만원(2급) ~205만원(6급)	1,525만원(2급) ~217만원(6급)	1,609만원(2급) ~229만원(6급)
재해징해시 (2급~6급)	재해 일반	41.4만원(2급) ~5.9만원	125.4만원(2급) ~17.9만원(6급)	209.4만원(2급) ~29.9만원(6급)
	재해 일반	5,920원(3일초과시 초과 1일당, 120일한도)	17,920원(3일초과 시 초과 1일당, 120일한도)	29,920원(3일초과시 초과 1일당, 120일한도)

도 2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시 보  
험법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담보등  
을 해야 하는데 齒協은 회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  
해 이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다시말해 치협은 대리점 수수료의 3%를 가지고 의  
료분쟁지원 및 대책수립과 각종 재해발생시 지원금  
지급등 회원복지추진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齒協은 전담기구인 연금제도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그 위원들을 각 시도지부 총무이사들  
로 구성, 지부위원회의 권익을 보존토록 하였으며 위  
원회내에 분야별 전문기구로 실무소위원회를 설치하  
기로 했다. 분야별 실무 소위원회에서는 의료분쟁이나  
재해발생시, 대출심사나 조정시에 정확한 기준에 의  
해 심사토록할 예정해 심사토록할 예정이다.

(천원)

최 초 가입인원	구 분	구 분				
		10차년도	15차년도	20차년도	25차년도	30차년도
2,000명	연간부담금	12,060,000	22,140,000	34,920,000	50,400,000	68,580,000
	연간지원액	361,800	664,200	1,047,600	1,512,000	2,057,400
4,000명	연간부담금	19,260,000	32,940,000	49,320,000	68,400,000	90,180,000
	연간지원액	577,800	988,200	1,479,600	2,052,000	2,705,400
6,000명	연간부담금	26,460,000	43,740,000	63,720,000	86,400,000	111,780,000
	연간지원액	793,800	1,312,200	1,911,600	2,592,000	3,353,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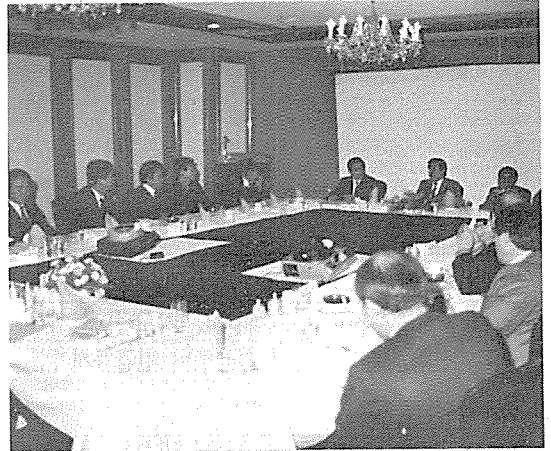
기준 : 1인당 1구좌(30,000원) 가입시, 매년 300명 신규가입시

## “회원의 편의위해 자동이체 납부제 채택 연금제도 실시는 3월 1일부터”

지난 11일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부 총무이사 연석회의에서는 치협 金一京부회장, 李鍾律총무이사, 金鐘悅법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 연금제를 중점적으로 논의 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가입 많은 회원의 가입 참여를 위해 임의 가입보다 단체가입을 권유키로 했으며 가입회원의 편의를 위해 보험료 납입방법을 은행구좌 자동이체 방법을 채택 하였다.

또한, 가입자격도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가입연령이 초과된 회원의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까지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등 문호를 넓힐 계획이다.

한편, 치협은 이연금제도를 3월 1일 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각지부별로 가입승인 서명을 빠른 시일 내로 받아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회원들에게 보다 상세하고 설득력있게 연금제도의 유용성에 대해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총무이사 연석회의를 李鍾律총무이사가 主宰하고 있다〉

## “공동의 혜택, 汎치과계 발전을 위한 회원의 적극적 참여가 關鍵”

尹興烈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여러 공약사업 중 하나인 치과의사연금제도. 이제 실시 시기만 남겨놓은 이 제도는 여느 제도와는 달리 그 성격이 복합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가 齒協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하겠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회원들이 호응하

여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다시말해 문제는 회원들의 이해와 가입여부에 있는데 공동의 혜택과 汎치과계를 위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치과계의 미래로 한층 밝아질 것이다.

〈\*자료제공 : 치과의사연금제도관리위원회〉